부록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2학년도 시즌5 제1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4~9] 사회 통합

제삼자를 위한 계약과 타인을 위한 보험

지문 평가

지문의 정보량이 상당할수록 개념들 간의 층위를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에서는 '이행 인수 계약'과 대비하여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에서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인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가) 사회 – 법학 – 제삼자를 위한 계약

계약, 채권, 급부, 채무, 이행 인수 계약, 제삼자를 위한 계약, 급부 청구권, 낙약자, 요약자, 수익자, 원인 관계, 보상 관계, 동시 이행의 항변권

(나) 사회 – 법학 – 민사집행법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 계약자, 보험금 청구권, 해약 환급금 청구권, 책임 준비금, 해약 수수료, 2009년 대법원, 추심 명령, 2011년에 개정된 민사집행법의 시행령

(가)문단 1 제삼자와 관련된 계약

1) 일반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두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채권 혹은 채무를 가지게 되어 당사자와 관련한 권리 발생의 효력이 나타난다. **채권**은 특정 행위인 **급부**를 요구할 권리이며, **채무**는 급부를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 '일반적인 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가령 갑이 소유한 그림을 을에게 판매하는 계약이 체결되면 갑과 을에게는 다음과 같은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인 계약의 예시	
갑	을에게 판매 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 을에게 그림의 인도를 이행해야 할 의무
을	갑에게 그림의 인도를 요구할 권리 갑에게 판매 대금의 지급을 이행해야 할 의무

➡ '계약'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상식에 가까운 수준으로 항상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2) 그런데 '이행 인수 계약'이나 '제삼자를 위한 계약'처럼 당사자가 아니라 제삼자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제삼자에게 권리를 발생시키는 계약도 있다.

➡ 이건 '일반적인 계약'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개입되는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이다.

맥락 짚기 지문의 중심 화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삼자와 관련된 두 가지 유형의 계약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의식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야겠다.

(가)문단 2 이행 인수 계약

1) 갑이 을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병으로부터 금전을 받을 일이 생겼을 때, ……

➡ 가령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병으로부터 150만 원의 금전을 받을 일이 생겼다고 가정하자. 이때 갑이 병과 '일반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병이 자신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급부로 하는 채무를 부여할 수도 있겠으나……

2) …… 갑은 병으로 하여금 [을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하는 **'이행 인수 계약'**을 병과 체결할 수 있다.

➡ 그 대신 '병이 을에게 100만 원을 대신 갚고, 나머지 금액만 갑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단다. 이런 형태의 계약이 바로 '이행 인수 계약'이겠다.

3) 이 계약에 의해 갑은 을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병에게 요구할 수 있고, 병은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 '이행 인수 계약'에 의해 갑은 을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병에게 요구할 채권을 갖고, 병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할 채무를 진다.

4) 그런데 이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갑과 을의 채권 관계가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을은 갑에게 급부를 요구할 권리를 유지한다. 을은 '이행 인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이며 병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않지만, 이 계약은 을의 이익인 을의 채권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주목 '이행 인수 계약'에 의해 '을에 대한 갑의 채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을은 여전히 갑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병에게는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병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행 인수 계약'의 당사자인 갑밖에 없다.

➡ 결국 '이행 인수 계약'은 문단1–2)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삼자의 이익과 관련된 계약'은 맞으나 '제삼자에게 권리를 발생시키는 계약'은 아닌 거다.

인수 이행 계약 : 갑과 병		
	원래 존재하던 권리 관계	새롭게 발생한 권리 관계
갑	을에게 급부를 이행할 의무	병에게 을에 대한 급부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
병	·	갑의 채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
을	갑에게 급부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	·

(가)문단 3 제삼자를 위한 계약

1) 이와 달리[→ 제삼자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이행 인수 계약'과 달리] **'제삼자를 위한 계약'**은 제삼자에게 **급부 청구권**을 부여하는 계약이다.

➡ 반면 '제삼자를 위한 계약'은 제삼자에게 '급부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발생시킨다. '이행 인수 계약'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겠다.

2) 가령 을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갑이 ……

➡ 여기까지는 문단2–1)의 '갑이 을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과 동일하다.

3) …… 이번에는 정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매도하면서 매매 대금을 직접 받지 않고 제삼자인 을이 그에 대한[→ 정이 갑에게 지불해야 하는 매매 대금에 대한] 급부 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정과 체결할 수 있다.

➡ 이 부분이 차이점이겠다.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제삼자인 을에게 '급부 청구권'이 부여된다. 이때 '급부 청구권'은 '정이 갑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면 충분하겠다.

4) 갑은 정에게 제삼자에 대한 급부를 요구하는 이 계약을 통해 정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을에게 건네는 수고를 덜 수 있다.

➡ 덕분에 계약의 당사자인 갑은 ['이행 인수 계약'과 마찬가지로] 정에게 을에 대한 '급부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정에게 직접 을에게 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주목 더 나아가 제삼자인 을에게 '급부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을도 정에게 '급부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행 인수 계약'에서는 을이 갑의 상대방인 병에게 '급부의 이행'을 요구할 수 없었다.

5) 다만 이 계약의 체결에 따라 을이 곧바로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을이 정에게 권리를 취득하겠다는 수익의 의사를 직접 표시할 때에 급부 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취득된다.

➡ 정리해 보자.

제삼자를 위한 계약 : 갑과 정		
	원래 존재하던 권리 관계	**새롭게 발생한 권리 관계**
갑	을에게 급부를 이행할 의무	정에게 을에 대한 급부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
정	·	갑의 채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
을	갑에게 급부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	**정에게 급부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 급부 청구권]

➡ 세 번째 문제의 발문에서 "계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권리"는 여기서 '새롭게 발생한 권리 관계'를 묻는 셈이겠다.

(가)문단 4 원인 관계와 보상 관계

1)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삼자에 대한 급부 이행을 요청한 이를 **요약자**, 제삼자에게 급부를 이행하기로 승낙한 이를 **낙약자**, 제삼자를 **수익자**라 부른다.

➡ 관계가 복잡할수록 앞서 등장한 예시를 적극 활용하자. '갑'이 요약자, '정'이 낙약자, '을'이 수익자겠다.

2) 또한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원인 관계**,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보상 관계**라 한다.

➡ 마찬가지로 예시를 활용하자. 갑과 을의 관계, 즉 '제삼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원인에 해당하는 기존의 채무 관계를 '원인 관계'라 하고, 갑과 정의 관계, 즉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 간의 관계를 '보상 관계'라 한단다.

3) 원인 관계는 수익자가 급부 청구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최초의 계기일 뿐, 수익자의 급부 청구권의 법적 효력은 보상 관계에 의존한다.

➡ 2)의 설명을 고려하면 이게 상식적이겠다. '급부 청구권'은 어디까지나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데, '보상 관계'야말로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의한 것이니 말이다.

4) 계약 체결 후에 다른 이유로 원인 관계에 변동이 있더라도 수익자의 급부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계약이 해제되거나 중도 해지되면 수익자의 급부 청구권도 소멸하는 것이다.

➡ 충분히 납득된다. 결론만 챙기자.

5) 요약자가 낙약자에 대한 채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수익자의 급부 청구에 대해 낙약자는 요약자가 채무를 다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권리인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한마디로 갑이 정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을이 정에게 급부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정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갑이 나한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게 이행될 때까지 나도 을한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거야!"

6) 한편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나 중도 해지는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나 낙약자만 할 수 있다.

➡ '제삼자를 위한 계약'이 일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건 그 당사자인 갑이나 정만 할 수 있는 거다.

주목 그보다는 요약자나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에 의해 '보상 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4)에서 설명한 대로 을의 '급부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점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나)문단 1 타인을 위한 보험

1) 보험료 납부 등의 채무를 이행하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를 자신이 아닌 제삼자로 지정하는 계약을 보험 회사와 맺을 수 있다.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속하는, 이 같은 **'타인을 위한 보험'**은 수익자의 생계 등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다.

➡ (가)와 (나)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좋은 독해자라면, 이때 다음과 같은 대응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제삼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나)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 계약자	보험 회사	타인 = 제삼자

➡ 이때 수익자가 '보험 회사'에게 '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추론 역시 가능하겠다[문단3-1)].

2) 그런데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 이외에 다른 채무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권리마저 침해되어 수익자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맥락 짚기 (나)의 중심 화제겠다. 어떻게 수익자의 권리가 침해되는지, 이를 해결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를 의식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야겠다.

(나)문단 2 해약 환급금 청구권의 문제 (1) - 2009년 판례

1)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무를 불이행할 시에, 채권자는 채무자[→ 보험 계약자]의 재산적 권리를 압류할 수 있다.

➡ 이때의 '채권자'는 '보험 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무'의 이행을 요약자[→ '보험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이다. '낙약자'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2)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은 수익자에게 있으나 중도 해지에 따른 **해약 환급금 청구권**은 보험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해약 환급금 청구권은 보험 계약자의 재산적 권리이므로], 채권자는 해약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법원에 신청할 여지가 있다.

➡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다. '보험금 청구권'과 달리 '해약 환급금 청구권'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단다.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 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무'와 무관한 수익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3) 보험 회사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미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해 **책임 준비금**을 적립하는데, 책임 준비금에서 **해약 수수료**를 제외한 것이 해약 환급금이다.

➡ '해약 환급금'이 뭔지도 챙겨 두자.

> 해약 환급금 = 책임 준비금 - 해약 수수료

4) 2009년 대법원은 법령에 해약 환급금 청구권이 압류 금지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채권자가 채권의 강제 집행에 대한 법원의 허가인 **추심 명령**을 얻으면 채무자의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해약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을 근거로 '추심 명령'을 얻어서, 채무자[→ 보험 계약자]의 재산적 권리를 압류할 수 있다. '해약 환급금 청구권'도 따라서 압류 대상이 된다.

➡ 다만 '해약 환급금 청구권'은 중도 해지에 근거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직접 채무자의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해약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나)문단 3 해약 환급금 청구권의 문제 (2) - 2011년 개정

1) 그러나 본래 해약 환급금 청구권은 보험 계약이 해지되어야만 행사가 가능한 조건부 권리여서, 해지 전에는 압류 대상이 되기 힘들며 ……

➡ 이런 반론이다. "아니 애초에 해약 환급금 청구권은 해지 전에는 행사될 수도 없는데, 그걸 압류하겠다고?"

2) …… 추심 명령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이는 거다. "심지어, 그래서 압류할 수 있게 채무자의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다고?"

3) 또한 해약 환급금 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추심 명령을 얻어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마저 소멸하므로, 2009년 대법원 판례는 보험의 사회 보장적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잇달았다.

➡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큰 문제 같다. '타인을 위한 보험'은 어디까지나 수익자의 생계 등 안전 보장을 위함인데[문단1-1)],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해도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4) 이에 **2011년에 개정된 민사집행법의 시행령**은 추심 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보장성 보험의 해약 환급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2009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결책이겠다. 채권자가 추심 명령에 의해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 환급금을 압류하기 위한 것], '수익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일 테다[문단1-2)].

➡ 여기서 헷갈리지 말자. 보험을 해지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 다만 보험 해지로 인해 발생한 '해약 환급금'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해지할 유인을 없앤다는 느낌이다.

5) 다만, 보험료 체납과 같이 강제 집행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해약 환급금은 1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 물론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이 사유일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 **주목** 그 이외의 사유[→ (가)의 문단4-6)처럼 보험 계약자의 채무 불이행과 같은 사유]로 보험이 해지되어 해약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그 일정 부분은 압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나)문단 4 민사집행법 개정의 의의

1) 개정된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추심 명령으로 채무자의 보험 계약을 해지했을 때의 실익을 없앰으로써 제삼자인 수익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 이미 문단3-4)에서 떠올렸어야 하는 점이다.

2) 그러나 법령에 해약 환급금 청구권 자체에 대한 압류 금지를 명시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 맞다. '2011년의 개정'은 보험 해지의 실익을 없애는 것일 뿐이지, 해지 자체를 차단하지는 못한다. 여전히 수익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한다.

3) 또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 외에 저축성 보험도 생계뿐 아니라 사고 대비 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글의 마무리다.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다.

[10~13] 과학

펩신의 활성화와 단백질 분해

지문 평가

단백질 분해 효소가 필요한 이유에서 시작해 단백질 분해 효소 중 하나인 '펩신'의 활성화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한 지문이다. 펩신이 활성화되는 과정의 조건과 순서를 이해하며 따라가면 어려울 것 없겠다. 문단3, 4에 특히 집중하자.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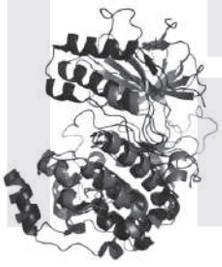
과학 – 생물학 – 단백질 분해 효소

아미노산, 펩톤, 펩신, 위 내강, 위 소와, 위샘, 주세포, 펩시노겐, 펩스타틴, 아세틸콜린, 가스트린, 분자 내 활성화 과정, 아스파르트산, 활성 중심 부위, 벽세포, 위산, 자가 촉매 반응, 촉매

문단 1 단백질 분해 효소의 필요성

1) 단백질은 수많은 **아미노산**들이 긴 사슬 모양으로 결합한 뒤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꼬이고 접혀서 형성된 입체 구조를 띠고 있다.

➡ 단백질의 형태와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단히 복잡하게 생겼다.



2) 음식물 형태로 섭취된 단백질은 분자량이 매우 커서 체내에 직접 흡수되지 못하고,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 적은 수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펩톤**들로 분해되어야 흡수될 수 있다.

➡ 단백질은 분자량이 작아져야만 체내에 흡수될 수 있다. 수많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 덩어리를 적은 수의 아미노산으로 쪼개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그래서 필요한 거다.

3) 단백질 분해는 쉽지 않은 작업이며 위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량의 단백질 분해 효소가 신속하게 분비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의 하나로 **펩신**이 있다.

➡ '펩신'은 위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의 일종이다. 분해의 결과물인 펩톤과 헷갈리지 않도록 간단히 정리부터 하고 시작하자. 이런 말장난에 휘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단백질 ⇨ 펩신에 의해 분해 ⇨ 펩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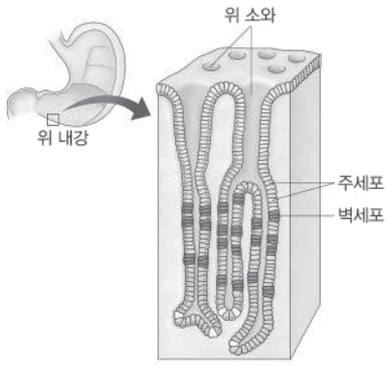
❗ **주목** 단백질 분해의 핵심은 '속도'에 있다. 섭취된 단백질이 영원히 위장 안에 머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거다. 그렇다면 '펩신'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주목해야겠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문단 2 펩시노겐의 합성과 분비

1) 위의 안쪽 공간인 **위 내강**의 표면에는 안으로 함몰된 구멍인 **위 소와**들이 있고, 위 소와에는 그 아래쪽에 주세포와 벽세포로 이루어진 **위샘**이 연결되어 있다.

➡ 펩신이 작용하는 위 내부의 공간에 대한 설명이다. 위 소와는 위 내강의 표면과 위샘을 연결한다. 다음의 그림은 위 내강의 실제 구조이다.



2) [위샘의] **주세포**는 **펩시노겐**을 합성한 후 우선 자신의 내부에 저장하는데, 이는 44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사슬인 펩스타틴이 펩신에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는 효소 전구체이다. **펩스타틴**은 펩신의 활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 '펩시노겐'은 '펩스타틴'과 '펩신'이 결합된 구조다. 비슷한 이름들이 자꾸 반복되니 헷갈리겠지만, 그럴수록 더 꼼꼼하게 정리하자.

펩시노겐 = 펩신 + 펩스타틴[→ 펩신 활성 억제]

➡ 펩스타틴은 펩신의 활성을 억제하므로, '주세포'에 저장된 펩시노겐은 아직 단백질을 분해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단백질을 분해해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져야 비로소 분해 효소인 '펩신'이 활성화될 거다.

참고 A[→ 펩시노겐]가 체내에 분비된 후 B[→ 펩신]로 전환된다고 할 때 A를 B의 전구체라고 한다. 위샘의 주세포에서 전구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활성 상태인 펩신으로 합성된다면, 합성되는 공간인 세포마저 분해해 버릴 수 있다. 세포 역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구체 상태로 합성한 후 분비하는 것이다.

3) 펩시노겐은 비활성 상태로 주세포 내부에 저장되어 있다가, 단백질 분해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주세포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나 위장관 호르몬의 일종인 **가스트린**의 자극을 받으면 위 내강으로 분비된다. 이때 주세포의 기능이 원활할수록 더 많은 양의 펩시노겐이 분비된다.

➡ 단백질이 유입되면 주세포는 '아세틸콜린'이나 '가스트린'의 자극을 받는다. 그로 인해 '펩시노겐'이 위 내강으로 분비된다.

주세포 내부에 펩시노겐[→ 비활성 상태] 저장
⇩
아세틸콜린 및 가스트린이 주세포 자극
⇩
위 내강으로 펩시노겐 분비

➡ 주세포의 기능과 관련된 상관관계도 정리하고 가자. 주세포의 기능이 활발해야 '펩시노겐'도 위 내강에 많이 분비된다.

주세포의 기능↑ ⇨ 펩시노겐의 분비량↑

4) 이후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아 펩시노겐이 분해되면서 펩신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분자 내 활성화 과정과 자가 촉매 반응의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 펩시노겐이 분해되어 펩신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단백질 분해 효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위 내강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단다.

펩시노겐 ⟶ 펩신
분자 내 활성화 과정
자가 촉매 반응

맥락 짚기 앞으로 각각의 과정을 구분하되, 각각의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주목해야겠다.

문단 3 분자 내 활성화 과정

1) **분자 내 활성화 과정**은 펩시노겐의 활성 중심 부위에서 이루어진다. 이 부위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아스파르트산** 한 쌍이 마주 보고 있고, 그 위에는 **펩스타틴**이 걸쳐 있다.

➡ 문단2-2)에서 펩시노겐은 펩신에 펩스타틴이 결합된 구조라고 했다. '활성 중심 부위' 위에 펩스타틴이 걸쳐 있다고 하니 활성 중심 부위는 펩스타틴이 아닌 펩신에 있는 부위일 것이다.

2) **활성 중심 부위**는 해당 부위의 두 아스파르트산으로부터 수소 양이온이 펩스타틴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 활성화되는데, 이러한 활성화는 강한 산성 환경에서 일어난다.

➡ 그렇다면 핵심은 위 내강에 어떻게 '강한 산성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지에 있겠다. 그래야만 활성 중심 부위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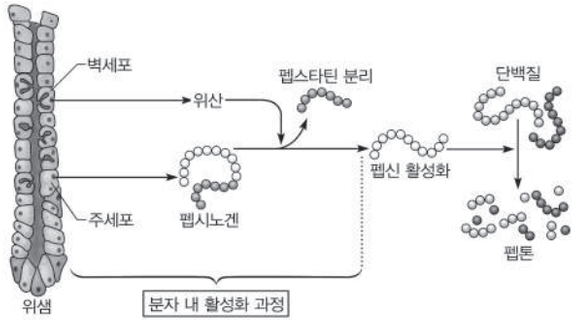
3) 단백질이 섭취되어 [위샘의] 주세포에서 [위 내강으로] 펩시노겐이 분비될 때, 위샘의 **벽세포**는 강한 산성을 띠는 **위산**을 위 내강으로 분비한다. 위산은 약한 산성이던 위 내강의 환경을 강한 산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성을 띠는 주세포 내부에서 비활성 상태에 있던 활성 중심 부위는 위 내강에서 활성을 띠게 된다.

➡ '주세포'가 위 내강에 '펩시노겐'을 분비하면, '벽세포'는 위 내강에 '위산'을 분비한다. 그로 인해 펩시노겐의 활성 중심 부위가 활성화되고……

주목 이건 '펩신'이 활성화된다는 얘기가 아직 아니다. '펩시노겐'의 '활성 중심 부위'가 활성화되는 거다.

4) 이렇게 활성 중심 부위가 활성화되면 그 위에 걸쳐 있던 펩스타틴이 분리되면서 펩신이 활성화된다.

➡ 그러면서 펩스타틴이 분리된다. 펩신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던 펩스타틴이 떨어져 나왔으니[문단2-2)] 비로소 펩신이 활성화된다.



문단 4 자가 촉매 반응

1) 분자 내 활성화 과정은 비교적 느리게 일어나므로 이 과정만으로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는 위 내강에 유입된 단백질을 신속하게 분해하기에 충분한 양의 펩신을 만들어 낼 수 없다. 그래서 분자 내 활성화 과정을 거쳐 소량의 펩신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자가 촉매 반응을 통해 펩신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는 작용이 나타난다.

➡ 문단1–3)에서도 강조했지만 단백질 분해는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분자 내 활성화 과정'으로는 충분한 펩신을 빠르게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거다.

➡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자가 촉매 반응'인데, 그게 뭐냐면……

2) **자가 촉매 반응**은 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 펩신]이 다시 자신[→ 펩신]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의 **촉매**[→ 펩신]로 작용하는 반응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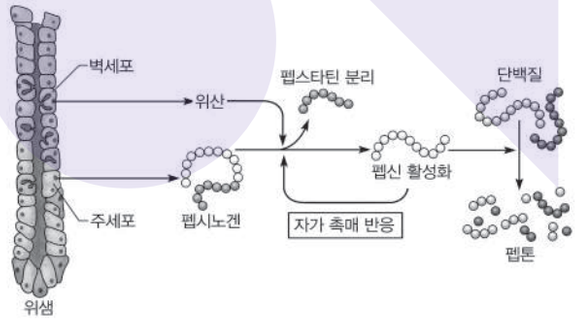
➡ 자기가 자신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의 촉매가 되는 반응이란다. 굉장히 신기하다.

3) 위 내강으로 분비된 펩시노겐의 일부가 분자 내 활성화 과정을 거쳐 활성 상태의 펩신이 되면 이 펩신은 아직 분해되지 않은 다른 펩시노겐을 분해하는 촉매로 작용한다.

➡ 벽세포가 위 내강에 위산을 분비하면 펩시노겐은 분자 내 활성화 과정에 의해 펩신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펩신은 아직 분해되지 않은 다른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전환되는 것을 돕는다.

➡ 이러한 자가 촉매 반응은 펩신이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 즉 펩신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반면 분자 내 활성화 과정은 펩신이 없는 환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즉 분자 내 활성화 과정에 의해 최초로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전환되어야만 자가 촉매 반응도 가능해지는 거다.

참고 촉매 :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을 매개하여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추는 일 또는 그런 물질.



4) 그래서 펩신의 농도 증가율은 펩신의 농도가 높을수록 급격히 커진다. 이렇게 활성화된 다량의 펩신은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작업하여 단백질을 펩톤으로 분해한다.

➡ 펩신이 증가한다는 건 펩시노겐이 감소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자가 촉매 반응에 의해 분비된 모든 펩시노겐이 분해될 때까지[→ 모든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전환될 때까지] 펩신의 농도는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할 거다.

➡ 한번 살짝 밀어 주니까[→ 분자 내 활성화 과정], 어느새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빠르게 달려가는 자전거를 상상하면 되겠다[→ 자가 촉매 반응].

펩신의 농도↑ ⇨ 펩신의 농도 증가율↑
분해되는 펩시노겐의 양↑ ⇨ 펩시노겐의 농도 감소율↑

주목 결국 자가 촉매 반응을 통해 단백질 분해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단1–3)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거다.

[14~17] 인문

종 동일성 문장과 물리주의 부정

지문 평가

물리주의를 부정하는 '크립키'의 논증, 그에 대한 '힐'의 반박까지 잘 설명한 지문이다. 논증 과정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면 글이 상당히 난해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인문 – 철학 – 종 동일성 문장, 크립키

물리주의, 종 동일성 문장, 자연종 명사, 크립키, 힐, 공감적 상상, 지각적 상상

문단 1 물리주의가 옳지 않다는 추론

1) 물리적인 신체 없이 의식만으로 이루어진 존재자를 X라 하자. 우리는 X의 존재를 온전하게 상상할 수 있을까?

➡ "에이,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라는 반박은 접어 두고, 일단 한번 X의 존재를 상상해 보자. 굉장히 관념적인 뭔가가 떠오른다.

2) 철학자들이 이 물음을 제기하는 이유는 그러한 상상[→ X의 존재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다면 정신 상태와 물리 상태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물리주의**가 옳지 않다고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신 상태와 물리 상태가 동일하다는 '동일론'은 물리주의의 여러 입장들 중 하나이다. '정신 상태 = 물리 상태'라고 한다면 당연히 '물리적인 신체 없이 의식만으로 이루어진 존재자'는 성립할 수가 없다. 결국 X의 존재를 상상하는 것은 '물리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 이 논의는 현실에서 존재하는 X를 찾자는 것이 아니다. X의 존재를 상상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다. 의문이 생겨야 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떻게 상상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물리주의가 옳지 않다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일까?

문단 2 자연종 명사와 종 동일성 문장

1) a와 b가 자연종 명사일 때 "a는 b와 동일하다."라는 문장을 **종 동일성 문장**이라 한다. **자연종 명사**는 자연에 있는 특정 종(種)이나 종류만을 지칭할 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물은 H_2O와 동일하다."와 같은 종 동일성 문장은 '물'이 지칭하는 자연의 물과 'H_2O'가 지칭하는 자연의 물이 동일하다는, 종의 자기 동일성을 주장하는 문장이다.

➡ '자연종 명사'와 '종 동일성 문장'이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추상도가 굉장히 높으니 주어진 예시를 적극 활용하자.

<종 동일성 문장>

a와 b가 자연종 명사일 때
"a는 b와 동일하다."
⇩
a와 b가 지칭하는 자연의 종이 X라면
"X는 X와 동일하다."
[→ 종의 자기 동일성 주장]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 a와 b가 지칭하는 것이 현실에서 실제 동일한 종이어서 그 문장이 현실적으로 참이라면, 그것이 거짓인 상황을 상상할 수 없으므로 그 문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없어서 필연적으로도 참이다.

➡ 현실적으로 참인 종 동일성 문장에 대해 '상상 → 가능성 → 필연성'으로 연결되는 논증을 따라가 보자.

<종 동일성 문장의 '참'>

a가 지칭하는 것 — b가 지칭하는 것

현실에서 실제 동일한 종인 경우에

⇩

현실적으로 참

⇩

거짓인 상황 상상 **불가능**

⇩

거짓일 가능성 없음

⇩

필연적으로 참

3) 철학자들은 어떤 종 동일성 문장이 거짓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 즉 그 문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어서 필연적 참이 아니라면,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참이 아니라고 본다.

➡ 2)의 '논증에서 '상상 불가능'을 '상상 가능'으로 바꾸어 적용하면 된다.

<종 동일성 문장의 거짓 가능성>

거짓인 상황 상상 **가능**

⇩

거짓일 가능성 있음

⇩

필연적 참이 아님

⇩

현실적으로 거짓

➡ 3)의 추론은 2)의 논증[→ 종 동일성 문장이 현실적으로 참이라면, 그 문장은 필연적으로도 참이다.]의 대우를 적용한 추론이다.

맥락 짚기 이제 이를 통해 문단1-2)의 '물리주의가 옳지 않다'는 추론을 파악하면 되겠다.

문단 3 크립키의 물리주의 부정 (1)

1) 흔히 물리주의자는 종 동일성 문장이라 할 수 있는, "고통은 C-신경 섬유의 자극과 동일하다."라는 문장 P를 주장한다.

➡ 문장 P는 '고통'이 지칭하는 것과 'C-신경 섬유의 자극'이 지칭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의미다. '고통'과 'C-신경 섬유의 자극'이 현실에서 실제 동일한 자연종을 지칭한다면, 문단2-2)의 논증에 따라 문장 P는 필연적으로 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장 P의 '참'>

'고통' — 'C-신경 섬유의 자극'

현실에서 실제 동일한 종을 지칭하는 경우에

⇩

현실적으로 참

⇩

거짓인 상황 상상 **불가능**

⇩

거짓일 가능성 없음

⇩

필연적으로 참

2) 그런데 **크립키**에 따르면 X[→ 물리적인 신체 없이 의식만으로 이루어진 존재자]의 상태와 유사하게 'C-신경 섬유의 자극 없이 일어나는 고통' 상태인 S1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으므로 P는 거짓이다.

➡ 크립키가 '물리적 신체 없이 의식만으로 이루어진 존재자'인 X와 유사하게 물리적인 'C-신경 섬유의 자극' 없이 의식적인 '고통'이 일어나는 S1을 떠올리는 것은 당연히 물리주의를 부정하기 위함이겠다[문단1].

➡ 이때 '크립키'는 문단2-3)의 논증을 활용한다. 만약 S1을 상상할 수 있다면, 이는 'C-신경 섬유의 자극이 아닌 고통'을 상상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 둘이 동일하지 않은, 즉 P가 거짓인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

➡ 따라서 P는 필연적 참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도 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거다. 결론적으로 '물리주의'는 부정된다.

<문장 P의 거짓 가능성>

S1[→ P가 거짓인 상황] 상상 **가능**

⇩

거짓일 가능성 있음

⇩

필연적 참이 아님

⇩

현실적으로 거짓

3) 물론 크립키는 이와 같이 '가능성'[→ 거짓일 '가능성']을 보장하여 P가 현실적으로 거짓임을 보여 주는 정당한 상상과 달리, ……

➡ 일단 P가 거짓이라는 논증에 활용된 S1에 대한 상상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4) ……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 상상도 있음을 지적한다.

➡ 거짓일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 상상도 있단다. 어느 지점에서 결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

5) 가령 "열은 분자 운동과 동일하다."라는 문장 Q와 관련하여 '분자 운동은 없지만 열이 있음'의 상황 S2를 상상할 수 있으므로 Q는 현실적으로 거짓이라고 판정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Q가 현실적으로 참이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로서 분명하다.

➡ 문장 Q 역시 '종 동일성 문장'으로 이해해야겠다. 즉 '열'과 '분자 운동'이 동일한 자연종을 지칭한다고 말하는 문장인 거다.

➡ Q도 P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S2를 상상함으로써 현실적 참이 아니어야 할 것 같은데……, Q가 현실적으로 참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분명하다.

➡ 해결책은 ① 문단2-3)의 논증을 부정하거나, ② 상황 S2에 대한 상상을 부정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겠다. 그런데 크립키 입장에서는 ①을 택하면 문장 P에 대한 성공적인 논증까지도 부정해야 한다. 아무래도 ②를 택하는 편이 유리하겠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6) 이에 대해 크립키는 이때의 상상은 분자 운동은 아니지만 열과 유사하게 따뜻함의 감각을 산출하는 것, 즉 열이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상상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 예상대로 ②를 택했다. S2[→ 분자 운동은 없지만 열이 있음]에서 '열'이 Q의 '열'이 아니라 열과 유사하게 따뜻함의 감각을 산출하는 다른 존재라고 한다면, [가령 감동을 주는, 마음에 온기를 주는 무언가를 떠올리면 되겠다.] S2는 '열'과 동일한 자연종을 지칭하는 상황에 대한 상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 Q가 거짓인 상황에 대한 상상이 될 수 없다는 거다.

맥락 짚기 그렇다면 S2의 '열'처럼 S1의 '고통'도 '고통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될 수는 없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겠다.

문단 4 크립키의 물리주의 부정 (2)

1) 크립키에 따르면 S1에 대한 상상은 고통이 아닌 것에 대한 상상일 수 없다.

➡ S1은 잘못된 상상이 아니라는 점을, 따라서 문장 P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거짓임을 보이려는 것이겠다.

2) C-신경 섬유가 없는 뇌를 가진 외계인이 고통을 느낀다고 상상해 보자. 이 상상에서 외계인이 고통의 감각을 갖는다면 그 감각 자체가 진짜 고통이므로, S1이 고통이 아닌 것에 대한 상상일 수는 없는 것이다.

➡ 만약 C-신경 섬유가 없는 뇌를 가진 외계인이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닌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고통은 고통의 감각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외계인 본인이 고통을 느낀다는데 너는 C-신경 섬유가 없으니 그건 고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Q의 '열'과 P의 '고통', 둘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하자. Q의 '열'은 따뜻함의 감각을 산출하는 존재들 중에 하나이고, P의 '고통'은 고통의 감각 그 자체이다.

주목 결국 크립키는 S1과 같이 '감각 그 자체'에 대한 상상은 잘못된 것일 수 없으나, S2와 같이 감각을 '산출하는 것'에 대한 상상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본 것이겠다.

3) 따라서 P가 거짓임을 보여 주는 상상[→S1]은 S2에 대한 상상과 달리 결함이 없는 상상으로서 결국 물리주의를 부정하는 정당한 근거가 된다.

➡ 지금까지 전개된 크립키의 주장을 종합하는 문장이다.

문단 5 크립키에 대한 힐의 반박

1) 이에 대해 힐은 S2의 상상에 대한 크립키의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S1에 대한 상상도 결함을 가지며 그것은 S2에 대한 상상이 지닌 결함과는 다른 방식의 결함이라고 주장한다.

➡ 힐은 S1에 대한 상상에도 결함이 있음을 주장한다. S1에 대한 상상에 결함이 있다면 문장 P가 거짓일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P가 거짓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물리주의에 대한 반박의 실패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 힐이 주장하는 '다른 방식의 결함'은 무엇일까?

2) 힐에 따르면 S1에 대한 상상은 진짜 고통과 C-신경 섬유의 자극에 대한 상상이기는 하다.

➡ 일단 상상의 대상에 대해서는 결함이 없다.

3) 다만 이는 두 가지의 독립적인 상상 작용이 순차적으로 작동하면서 서로 묶여 있는 상상이다.

➡ '두 가지'라는 건 종류가 다르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독립적'이라는 건 서로 의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힐은 '고통'에 대한 상상과 'C-신경 섬유의 자극'에 대한 상상이 서로 의존하지도 않고 종류도 다른 개별의 상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4) 고통의 현존 또는 부재 상태를 상상하는 것은 이른바 **'공감적 상상'**으로서, 상상하는 자가 스스로, 고통을 느끼는 자의 감각과 유사한 감각 상태에 빠지거나 혹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 '고통'에 대한 상상은 '공감적 상상'이라는 설명이다.

5) 반면 C-신경 섬유의 자극의 현존 또는 부재 상태에 대한 상상은 이른바 **'지각적 상상'**으로서 뇌의 특정 부분에 있는 C-신경 섬유라는 물질의 움직임을 과학적 도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각하거나 그 부재를 지각하는 상태를 상상하는 것이다.

➡ 'C-신경 섬유'에 대한 상상은 '지각적 상상'이라는 설명이다.

S1에 대한 상상	
C-신경 섬유가 없는 뇌를 가진 외계인이 고통을 느낀다 [→C-신경 섬유의 자극 없이 일어나는 고통 상태]	
지각적 상상	**공감적 상상**
C-신경 섬유가 없다	고통을 느낀다

6) 힐에 따르면 이러한 두 종류의 상상 작용은 서로 독립적이므로 우리가 S1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는 고통과 C-신경 섬유의 자극이 실제로 서로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정당한 상상이 아니다. S1을 상상함으로써 물리주의를 반박하려는 크립키의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 고통에 대한 상상[→ 공감적 상상]과 C-신경 섬유의 자극에 대한 상상[→지각적 상상]은 서로 독립적이다. 그래서 S1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 S1에 대한 상상은 '고통의 존재에 대한 공감적 상상'과 'C-신경 섬유의 자극의 부재에 대한 지각적 상상'이라는 두 가지 독립적인 상상을 연이어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다. 즉 'C-신경 섬유의 자극 없이 고통이 존재하는 하나의 상황'에 대한 상상이 아닌 거다. 따라서 S1은 P가 거짓인 상황에 대한 정당한 상상일 수가 없다.

➡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니, 천천히 이해해 보자. 가령 '칼에 손이 베인 상황'을 상상해 보자. 베인 상처의 길이와 깊이, 출혈 등에 대한 상상은 '지각적 상상'이고, 칼에 베인 고통에 대한 상상은 '공감적 상상'일 것이다. 이 두 종류의 상상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각적 상상만 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공감적 상상만 할 수도 있다. 물론 둘 다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유형의 상상이 서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즉 '두 상황에 대한 상상'을 엮어서 '하나의 상황에 대한 상상'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주목 S1에 대한 힐의 반박은 결국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공감적 상상과 지각적 상상은 종류가 다른 두 가지 상상이야, 그 둘을 연이어 한다고 그 둘이 하나의 상상이 되는 건 아니야."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2~26] 수필

(다) 「수오재기」 정약용

작품 평가

삶에 대한 깨달음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글쓴이는, 자신을 행위의 주체인 '나'와 성찰의 주체인 '나'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세상의 유혹 등으로 인해 성찰 없이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양상을 두 '나'가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행위와 성찰이 함께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삶의 양상을 두 '나'가 함께하는 상황으로 나타냈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수오재(守吾齋, 나를 지키는 집)라는 것은 큰형님[→ 정약현]이 자신의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이상하게 여겨 이렇게 말하였다.

"만물 중에 나와 가장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니, 굳이 지키지 않은들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 '나'와 '나'가 떨어질 수 없으니 누구도 '나'에게서 '나'를 훔치거나 빼앗아 갈 수 없고, 그러니 '나'를 지킬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당연한 생각인 것 같은데, 이후 이 글에서는 이 당연해 보이는 통념을 뒤집는다.

나는 장기(長鬐)에 귀양 온 뒤로 늘 홀로 있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루는 문득 이 의문[→ '수오재'라는 이름과 관련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 벌떡 일어나 혼잣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참고 | 정조가 세상을 뜨고 순조가 즉위한 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정조에게 중용되었던 정약용은 현재의 포항 지역인 장기에 유배된다.

"대저 천하의 다른 모든 사물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겠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이고 달아날 자가 있겠는가.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중략) 나의 옷과 나의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군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지금 저 천하의 실이 모두 나의 옷이며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나의 양식이다. 도둑이 그중 한둘은 훔쳐 간다 해도 천하의 모든 실과 곡식을 바닥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밭'이나 '집'은 도둑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이어서, '옷'이나 '양식'은 도둑이 가져가더라도 다시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애써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직 나라고 하는 것만은 잘 달아나는 성질을 가졌으니, 드나드는 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를 떠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예전에 글쓴이가 했던 생각, 곧 '나'가 '나'를 떠날 수는 없다는 통념이다.],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꾀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며,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나'가 '나'를 떠나가서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고 말한 데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 이익에 눈이 멀면 그것을 취하고자 떠나가고, 겁을 먹으면 그것을 피하고자 떠나가고, 음악에 홀리면 정신을 놓고, 미인에게 빠지면 앞뒤를 분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나'라고 하는 것이 외물에 현혹되기 쉽다는 말이겠다.] 한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모르니,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런 고로 천하에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 열거된 사례들을 보면, '나'가 무엇인가에 현혹되어 '나'를 떠나간다는 말은, 삶의 자세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맹목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겠다. 행위와 성찰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본연의 자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가 무엇인가에 눈이 멀어 '나'를 떠나간다는 것은 결국 행위와 성찰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가 본연의 자아를 잃어버리게 됨을 의미한다.

나는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어버렸던 자다. 어렸을 때에는 과거 합격의 명예가 좋게 보여서, 떠나가 과거 공부에 빠져든 것이 십 년이다.[→ 글쓴이의 '나'가 과거 합격의 명예라는 유혹에 빠져 십 년 동안 떠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처지가 바뀌어[→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 나아가게 되자 홀연 검은 관모를 쓰고 비단 도포를 입은 채 대낮에 넓은 길 위를 미친 듯이 뛰어다녔으니, 이와 같이 한 것이 십이 년이다[→ 한번 떠나간 '나'가 과거 공부 십 년이 지난 뒤에도 돌아오지 않고, 관직에 올라 다시 십이 년 동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고 한다. 글쓴이는 십이 년간의 관직 생활 역시 본연의 자아를 유지한 시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이번에는 유배객이 되어] 한강을 건너고 조령(鳥嶺)을 넘어, 친척을 떠나고 선영을 버려둔 채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까지 내처 달려와서야 멈추었다[→ 장기에 귀양 온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다. 유배지에 묶인 몸이라, 더 이상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기에 멈춘 것이겠다.]. 이때에는 나는 땀을 흘리고 두려움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황황급급히 나의 발뒤꿈치를 쫓아 이곳에 함께 이르렀다. 내가 나에게 물었다.

➡ '나'가 앞서 달리던 '나'와 함께 유배지인 '이곳'에 도착했다는 말에서, 글쓴이는 자신을 두 개의 '나'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앞서 달리던 '나'[→ 과거 공부에 빠져 있었던 십 년간, 그리고 관직에 올라 미친 듯이 뛰어다녔던 십이 년간,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까지 온 동안]는 행위와 성찰이 함께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못했던, 즉 **성찰 없이 행동에 나섰던 '나'**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행위의 주체를 뒤쫓아 달려온 '나'는 **성찰의 주체인 '나'**로 이해할 수 있겠다.

"자네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온 것인가? 아니면 해신(海神)이 불러서 온 것인가? 자네의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苕川)[→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정약용의 고향 마을]에 있는데, 어찌하여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 성찰의 주체인 '나'가 행위의 주체인 '나'에게 묻는 말이자,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글쓴이의 진지한 성찰의 태도를 보여 주는 말이겠다.

그러나 소위 나라는 것은 끝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면서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기색을 보니, 얽매여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마침내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성찰의 주체인 '나'와 행위의 주체인 '나'가 비로소 함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끝에 글쓴이가 비로소 본연의 자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때 나의 둘째 형님 좌랑공[→ 정약전]도 그의 나를 잃고 그 나를 뒤쫓아 남해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둘째 형의 삶도 글쓴이와 마찬가지였다는 말이다.].

참고 | 정약전은 정약용과 마찬가지로 신유박해 때 유배를 당했다. 유배지인 흑산도에서 『자산어보』 등을 집필했다.

오직 나의 큰형님만이 그의 나를 잃지 않고 나를 지키는 집에 편안하고 단정하게 앉아 계시니, 어찌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큰형님이 그의 집에 수오재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일 것이다[→ 서두에서 제시한 화제에 대한 답이다. '수오재'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7~30] 현대시

(가) 「사랑스런 추억」 윤동주

작품 평가

작품 속에 표현된 시간과 공간에 주의를 기울여 가며 읽어야 하는 시다. 두 개의 공간과 두 개의 시간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화자가 제목에서 추억을 '사랑스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감상해 보자.

제 1~3연 서울 어느 조그만 정거장[→ 과거]

봄[→ 희망과 출발의 계절이다.]이 오던 아침[→ 새로운 출발에 가장 어울리는 시간이다.], 서울 어느 조그만 정거장에서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려,

➡ 과거의 어느 봄날 아침에 '나'는 서울의 어느 작은 정거장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린다고 했으니, 미래에 대한 애정과 기대를 간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상황에서 기차란 화자가 꿈꾸는 새로운 삶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수단일 것이다.

나는 플랫폼에 간신한(= 힘들고 고생스러운) 그림자[→ 화자의 삶이 고단하고 힘겨운 것임이 드러난다.]를 떨어트리고,

담배를 피웠다.

➡ 그런데 기차를 기다리는 상황이 마냥 즐겁고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간신한 그림자', '담배를 피웠다' 등에서 화자가 무언가 심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내 그림자는 담배 연기 그림자를 날리고

비둘기 한 떼가 부끄러울 것도 없이

나래(= 날개) 속을 속, 속, 햇빛에 비춰, 날았다.

➡ 비둘기가 부끄러움 없이 햇빛 속을 날았다는 말은, 비둘기와 달리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다. 서울 정거장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과거의 '나'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당당하지 못한 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 날개 속까지 햇빛에 환하게 비춰 보이며 거침없이 날아가는 비둘기와 담배 연기를 날리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나의 모습이 대비된다.

제 4연 시간과 공간의 변화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

나를 멀리 실어다 주어,

➡ 기다리던 기차가 왔으나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다. 화자가 원하고 소망하던 삶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겠다. 기차를 타고 간 곳은 아마도 다음 연에 나오는 '동경'이겠다.

제 5연 동경 어느 하숙방[→ 현재]

봄은 다 가고— 동경(東京) 교외 어느 조용한 하숙방에서, 옛 거리에 남은 나를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

➡ 현재의 '나'가 처한 상황이다. 봄은 가 버렸고 화자는 동경 하숙방에 있다. 현재의 '나'에게는 '희망과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그 희망과 사랑은 '옛 거리에 남은 나' 즉 기차를 기다리던 시절의 '나'에게 있고, 그래서 '나'가 과거의 나를 그리워하는 것이겠다.

➡ 과거의 '나'는 현실을 힘겨워했고, '옛 거리' 즉 '서울'을 떠나고 싶어서 자신을 새로운 삶으로 데려다 줄 기차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동경에 있는 '나'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 옛 거리를 떠나온 후의 생활이 과거의 이상과는 다른, 긍정적인 의미를 찾기 어려운 삶이기 때문이겠다.

➡ 봄이 다 가 버렸다는 말은, 화자가 자신의 젊음도 다 가 버렸다고 느끼고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다. 여기서 젊음이란 심리적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즉 간직하고 있던 희망과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젊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제 6~7연 기다림의 상황

오늘도 기차는 몇 번이나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오늘도 나는 누구[→ 제5연에서 이야기한 과거의 '나']를 기다려 정거장 가차운(= 가까운) 언덕에서 서성거릴 게다[→ 미래형 어미를 사용하여, 오늘도 그럴 것이며, 내일도 그럴 것이며, 모레도 그럴 것이라는 의지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 화자는 정거장 가까운 언덕에서 '무의미하게' 여러 번씩 지나가는 기차를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의 화자가 과거의 화자를 만난다는 것은 지금의 화자가 과거의 모습을 되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곧 화자가 예전 같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예전 같은 순수와 열정과 적극성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화자는 그 회복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제 8연 마무리

— 아아 젊음은 오래 거기[→ 희망과 사랑을 품고 기차를 기다리던 시절의 '나'가 있는 곳] 남아 있거라.

➡ 화자의 '젊음'은 여기가 아니라 '거기'에 있다. 그리고 화자는 그 젊음을 향해 오래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한다.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자아 또는 과거의 바람직했던 모습을 미래에도 계속 지켜 나가고 싶다는 소망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